

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2004. 1. 19 제정

2005. 4. 21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 4 조 (목적 및 업무) ①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정관,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4.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지적재산권·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
7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

제 5 조 (업무조정 의 건의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 2 장 조 직

제 6 조 (이사)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.

제 7 조 (단장) ①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.

②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④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제 8 조 (부단장) ①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부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.

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9 조 (기구)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.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.

제 11 조 (인사) ①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,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연구원,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③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,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,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산 및 회계

제 12 조 (재산의 종류)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제 13 조 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3. 사업수익

제 14 조 (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)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임대, 교환, 증여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무의 면제

제 15 조 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4 장 보 칩

제 16 조 (비밀유지 의무)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7 조 (정관의 변경 등) ①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을 발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.

제 18 조 (해산)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.

1.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
2.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는 때

②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
③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 그러나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9 조 (공고) ①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에서 정한 공고사항
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및 이대학보에 공고한다. (개정 2005.4.21)

부 칙(2004. 1. 19 제정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산학협력단 설립등기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지적재산권의 이전)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.

부 칙(2005. 4. 21 개정)

이 정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